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51
----------	------

제출년월일 : 2013. 10. 23.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협의회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현지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정조례안 : 별임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별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2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조례 제정 방침 문서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산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자연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지역본부장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으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협의회 회장은 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재난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이 된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 회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8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재적회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지 조사)**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협의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2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 및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의한 수당·여비
 - 민간인 전문가의 현장참여 기술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재난안전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재난안전과장 김 남 림
	담 당 직위·성명	복구지원계장 김 원 재
	담당자 성명(전화)	이 철 원 (☎2162)

[별지 제1호 서식]

안산시 제○○호

위 촉 장

성명 :

소속(대표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소 :

위 사람은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